

⑤이용료 납부

-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, 메신저, 스마트앱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)

①신원 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-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
②신원 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12조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입소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.
- ②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.
- ④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.
-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.
- ⑥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 대기 어르신이 없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유보가 가능하다.
- ⑦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.